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6230      |
| 의 퇴 인 | 최형두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3. 23. |
| 추계번호  | 26B0397      |

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지침의 포함 사항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정보보호지침<br>포함사항 추가<br>(안 제45조제3항) | 50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50  | 10  |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| <p>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3항)</p> <p>2. 원격 접속자·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·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등에 관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 &lt;신 설&gt;</p> <p>3.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및 내부자의 이상 행위 또는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</p> <p>6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외부 자원의 안전성 점검 및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 &lt;신 설&gt;</p>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| ○        | •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정보보호지침의 포함사항 추가(안 제45조제3항)
- 현행법<sup>1)</sup>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‘정보보호지침’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

1)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이하 “정보보호지침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·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·운영 등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
2.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3.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
4.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·조직·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
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포함사항에 “원격 접속자·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·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등에 관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, 내부자의 이상 행위 또는 접근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외부 자원의 안전성 점검 및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”를 추가하려는 것임
  - 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
-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 - － 유사사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)는 2024년 ‘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(사업비 5,000만원)’을 실시하였음
  - －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유사사례의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| 실시 기관                   | 연구용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시년도 | 예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<br>(한국인터넷진흥원) |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<br>－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| 2024 | 50 |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정보보호지침의 포함사항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정보보호지침의 포함사항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정보보호지침의 포함사항 추가 | 50   | －    | －    | －    | －    | 50 | 10  |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최동완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최동완 | 02-6788-3746 | dongwaniii@nabo.go.kr |